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5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11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 설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88년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하며
-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등 사안 발생시 운용하고 있으나, 초지법상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위치한 지역 이외에는 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어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코자 함.

4. 주요 골자

- 충청북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5. 검토 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가 초지의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이 발생할 시 운용하고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1980. 6. 7 (조례 제1016호) 본 조례가 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초지법 제5조에 규정된 초지가 2개 시·군 이상에 걸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초지도, 2개 시·군에 각각 분할하여 초지 조성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88년 이후 사안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희박한

본 조례는 행정의 효율화면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 참 부

- 충청북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